

남 양 주 시 보

제1869호

남양주시 고시 제2020-408호

도시관리계획(도로:소로2-262호선) (신설)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1. 우리시 진접읍 진별리 269-6번지 일원에 폭원이 협소한 현황도로를 확장하여 주민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도시관리계획(시설:도로) (신설)결정하고자 신청된 건에 대하여,
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해 도시관리계획 (신설)결정하고, 동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7조와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(신설)결정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3.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

2020. 10. 22.

남양주시장

1. 도시관리계획 (신설)결정 조서 및 사유서

가. 교통

1) 도로

가) (신설)결정 조서

구분	규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신설	소로	2	262	9.5	국지 도로	77	진접읍 진별리 269-6 (소로1-87호선)	진접읍 진별리 271-1	일반 도로	-	-	

나) (신설)결정 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경 내 용	변 경 사 유
-	소로 2-262호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설 - B=9.5m, L=77m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폭원이 협소한 현황도로를 확장하여 주민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함.

2. 도시관리계획 (신설)결정도면 및 지형도면 : 따로 붙임(계재는 생략). 끝.